

지난 6년간 **4백만가구**가  
**3조 2천억원**을 받았습니다

아직도  
모르세요?

# 일하는 즐거움 쌓이는 행복 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! 5월에 신청하세요~

**신청대상** 근로자와 자영업자

※ 신청요건은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!

**신청기간** 2015. 5. 1. ~ 6. 1.

※ 심사 후 9월에 지급예정



행복 · 희망의 길로 씩씩!!

“  
근로장려금은 연간 **최대 210만원**,  
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 
연간 **최대 50만원** 지급!  
”

☎ 국번없이 126번 [1번 누른 뒤 4번]

검색창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

## ○ 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?
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- ① **(가구요건)**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('96. 1. 2.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거나, 신청자가 60세 이상('54. 12. 31. 이전 출생)일 것

※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② **(총소득 요건)** 201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

[ 근로장려금 ]

[ 자녀장려금 ]

| 가구원 구성 | 총소득기준금액    | 연간 최대지급액 | 가구원 구성 | 총소득기준금액    | 연간 최대지급액 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단독가구   | 1,300만원 미만 | 70만원     | 단독가구   | 해당없음       | 해당없음      |
| 홀벌이가구  | 2,100만원 미만 | 170만원    | 홀벌이가구  | 4,000만원 미만 | 자녀인당 50만원 |
| 맞벌이가구  | 2,500만원 미만 | 210만원    | 맞벌이가구  | 4,000만원 미만 | 자녀인당 50만원 |

- ③ **(주택, 재산 요건)** 가구원 모두가 '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하며, 건물·토지·예금·현금·전세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(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%만 지급합니다.)

※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.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(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.)

## ○ 신청방법은?

전자신청(① ARS, ② 휴대전화, ③ 모바일 웹, ④ 인터넷)과 서면신청

## ○ 참고사항

🔍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(가산세 포함)와 2(5)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🔍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- 사업자등록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료 ·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.

※ 문의사항 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☎1577-1000), 국민연금공단콜센터(☎국번없이 1355)

**!**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환급과 관련하여 계좌비밀번호를 묻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이싱피싱 등 금융사기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